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9-674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5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(주)신원알피씨(이성원) ② 롯데건설(주)(하석주)
③ (주)한화건설(최광호) ④ (주)삼안(최동식)
⑤ (주)홍화(장성우)

나. 전화번호 : ① 031-781-8641 ② 02-3483-7823 ③ 02-2055-5399 ④ 02-6488-8416
⑤ 02-3455-7573

2. 명칭 : 콘크리트 및 강교량에 호환 가능하도록 시공 후 일체로 분리되는 브라켓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방법(BBCM 공법)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교량 / 교량 상부구조물

<기술의 요지>

본 신청기술인 BBCM(Built-in Bracket Cantilever Method)공법은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부 설치시 적용되던 재래식공법인 합판거푸집과 동바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으로서, 콘크리트거더에는 자력식지그를 이용하여 사전매립된 기초볼트, 강거더에는 상부플랜지 두께변화에 간섭없이 L형 리브데크(Rib-Deck)의 3번지지가 가능하도록 강거더에 부착된 거셋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브라켓을 설치하고, 캔틸레버의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브라켓을 일체로 분리하여 콘크리트 및 강교량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으로 고안된 분리형 브라켓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방법이며, 본 신청기술인 BBCM 공법은 시공 후 복잡한 가설재의 분리, 해체 등의 고소작업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으며, 브라켓 설치간격을 넓게 할 수 있어 개수를 최소화하여 캔틸레버부의 시공이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, 캔틸레버의 시공 후 브라켓을 간단히 분리할 수 있어 교량 미관 및 유지보수에 유리한 방법임

<범위>

브라켓과 L형 리브데크(Rib-Deck)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에 있어서, 콘크리트거더에는 자력식지그를 이용하여 사전매립된 기초볼트와 강거더에는 3번지지가 가능한 거셋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브라켓을 설치하고, 캔틸레버의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브라켓을 일체로 분리하여 콘크리트 및 강교량에 호환 가능하도록 고안된 분리형 브라켓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방법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- 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- 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 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 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 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- 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**조달청공고제2019-77호**

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

다음 당사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‘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(예정)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’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5월 22일

조 달 청 장

- 1.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2. 당사자
 - 당사자 : (주)메타정보기술(416-81-86949)
대표이사 김정환(730529-1*****)
 - 주 소 :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 50-0 705호
(쌍암동, 에이엠시티센트럴파크)
- 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: 직접생산확인 취소로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
- 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
- 5. 법적근거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,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[별표 2]
- 6. 의견제출
 - 기관명(담당부서) : 조달청(쇼핑몰구매과 ☎070-4056-7248)
 - 주 소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
 - 모사전송 : 0505-480-2002
 - 기 한 : 2019년 6월 7일(금) 18:00까지

붙임 :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. : 게재생략

●**병무청공고제2019-48호**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(법률 제15053호 2018. 5. 29.)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2019년 5월 22일

병 무 청 장